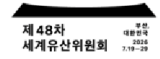




기후에너지환경부

기후에너지환경부



수신 원00 귀하

(경유)

제목 민원(1BA-2604-0256117) 처리결과 안내

-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(우편)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귀하의 민원내용은 ‘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분리배출표시제도에 담배꽂초 적용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
-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는 포장재, 제품의 의무생산자(제조, 수입업자, 포장재 활용 제품 판매업자)에게 출고·수입에 대한 재활용의무량을 회수·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써,
 -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, 재활용의무생산자 범위, 재활용사업공제조합, 실적 인정이 가능한 재활용 방법, 재활용 업체 등 관련 기반이 필요합니다.
- 현재, 담배의 경우 내부에 있는 유해 물질로 인해 다시 담배로 만들거나 하는 등의 재활용이 어려워 「자원재활용법」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
 - 따라서, 담배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 대상 품목으로 도입하는 것은 재활용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한편, 우리 부에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홍보·단속을 강화하고, 담배꽂초가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거리 쓰레기통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담배꽂초 수거와 무단투기 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- 「자원재활용법」 제14조에 따라 종이팩, 유리병, 금속캔,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하며, 종이, 금속, 유리,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·포장재는 한국환경공단의 지정승인을 받아 분리배출 표시할 수 있습니다.
 - 상세 분리배출 표시 방법은 「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」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며,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미만이거나, 내용물의 용량이 30g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「자원재활용법 시행령」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현재 담배꽂초 필터는 분리배출 표시 대상이 아니며, 분리배출 표시 의무 적용은 재활용의무 대상 포함 여부, 구조, 재질, 크기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최연기 주무관(044-201-7392), 생활폐기물과 박종호 주무관(044-201-7426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



주무관

최연기

공업사무관

전결 2026. 4. 21.

서윤식

협조자

시행 자원재활용과-1094

(2026. 4. 21.)

접수

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,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/ mcee.go.kr

전화번호 044-201-7392

팩스번호 044-201-7394

/ youngchoi@mcee.go.kr

/ 비공개(6)

K-헤리티지,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